

「2024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」

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

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뿌리산업 분야 신규 채용과 연계한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「2024년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」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4년 3월 13일
인천테크노파크 원장

I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4년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
- 목적 : 뿌리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
- 모집기간 : 2024년 3월 13일 ~ 예산 소진 시까지(선착순 모집)
- 지원대상 :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명시된 ‘중소기업’ 또는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」 제25조에 따른 ‘중견기업’으로서,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」 또는 인천테크노파크 「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」에 명시된 뿌리기업 근로자
※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‘뿌리기업 확인서’, ‘뿌리기술 전문기업’, ‘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
- 지원내용 : [1유형_근로자 지원]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
[2유형_근로자 지원] 근로자 월세 지원
- 지원규모 : [1~2유형_근로자 지원]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(1인당 월 20만원)
- 참여방법 :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‘비즈오케이(<https://bizok.incheon.go.kr>)’ 온라인 신청(기업이 신청)
- 수행기관 :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

III 지원 내용

- 지원 기간 : 지원대상 근로자 선정일로부터 12개월
- 세부 지원내용 : 총 2개 유형으로 1인당 월 20만원 지원(세부내용 하단 표 참조)

구분	뿌리기업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(1유형)	뿌리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 (2유형)
지원내용	뿌리기업 근로자 전세대출 이자 지원	뿌리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
지원금 및 기간	월 20만원 (최대 12개월)	
지원대상	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에 신규 채용 된 근로자 ※ 신규채용 : 2024년 2월 26일 이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인천광역시 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에 한함	
선정방식	접수순서(근로자의 자격요건 충족 시)	

II 신청 자격

○ 지원대상

- 인천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에 신규채용 된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
 - ※ 2024년 2월 26일 이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- 인천광역시 소재의 아파트, 빌라 등 공공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 근로자 거주 목적의 전세. 월세 주택 보유 근로자
 - [전세계약] 근로자 거주 전세 자금의 대출 이자 지원
 - ※ 대출 실행에 대한 은행의 "전세자금 대출 확인서" 증빙 필수
 - ※ 근로자 본인 및 동거하는 배우자 및 자녀 명의 대출도 인정함. 단,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"전세자금 대출"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확인서를 통한 증빙이 필수이며,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동거함을 증빙(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)하여야 함
 - [월세] 근로자 거주 임차 주택의 월세
 - ※ 회사소유의 건물(기숙사 등), 계약 상대방이 사업주이거나 특수관계자의 경우 참여 불가

○ 지원 제외 대상

- 인천 소재의 "뿌리기업"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- 기업이 세금(국세 및 지방세) 및 4대보험을 체납중인 경우
-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
- 휴·폐업중인 기업의 경우
- "지원 대상 근로자"가 정부(지자체) 및 유관기관에서 이미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(중복지원)
-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, 전세.월세의 계약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, 친인척 간의 계약인 경우,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
- 전.월세 대상이 물건이 인천소재가 아닌 경우
- 인천지역에서 타 도, 시, 군으로 사업장(공장)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
-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의 주소가 인천소재가 아닌 경우
- "지원 대상 근로자"가 "지원 대상 기업"의 대표이사(사장 등), 주요 주주, 이사, 감사, 그 외 특수관계자인 경우
- 전세.월세 대상 물건이 "지원 대상 기업"의 대표이사(사장 등), 주요 주주, 이사, 감사, 그 외 특수관계자의 소유일 경우
- 전세.월세 대상 물건이 132.2㎡(40평)을 초과하는 경우
-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중복 불가,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내 사업간 중복 지원 불가
- 그 외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VI 신청접수 및 평가·선정

- 접수기간 : 2024년 3월 13일 ~ 예산 소진 시까지(선착순 모집)
- 신청방법 :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'비즈오케이 (<https://bizok.incheon.go.kr>)' 통한 온라인 신청
 -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(주말·공휴일 제외) 모든 구비 서류 제출
- 선정방식 및 기준
 -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지원 순서에 따라 기업·근로자 서류검토 및 선정
 -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
 -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시 선정 제외

○ 지원절차

추진 단계		주요 내용
1	모집 공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기업 모집 - 비즈오케이 (https://bizok.incheon.go.kr) 온라인 신청
2	자격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 자격 검토
3	지원 협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ITP ↔ 기업 협약 체결
5	지원 근로자 통보 (기업→ITP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 채용 근로자 관련 지원 근로자 통보 서류 제출
6	지원금 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담기관에 지원금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필요 시 현장 점검 시행
7	지원금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로자 지원금 지급 서류 검토 약정일 기준으로 분기별 신청 및 지급
8	사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약정에 기반한 참여 근로자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- "지원 대상 기업 및 근로자" 적극 참여 필수

○ 신청기업 제출서류

순번	구분	제출 서류	비고
1	필수	「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」 참가 신청서	-
2	필수	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협조 및 이행사항 약속서(기업용) 1부	-
3	필수	사업자등록증 및 기업정보확인 동의서 1부	-
4	필수	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	-
5	필수	공장등록증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등 뿌리기업 확인 가능 서류 1부	-
6	필수	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23년 말) 각 1부 ※ 검색기간 설정 : 직전연도 말일 기준 예시) '23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 기간 '2023.12.31 ~ 2023.12.31'	-
7	필수	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신청일 기준 발급) 1부	-
8	필수	국세, 지방세,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) 각 1부	-
9	필수	'23년 말 기준 표준재무제표(국세청) ※ '23년 기준 재무제표 제출 불가 시 '22년 기준 재무제표 제출	-
10	기타	전담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	-

* 별도 서식파일은 '비즈오케이 <https://bizok.incheon.go.kr>'에서 확인 가능함

○ 지원 근로자 통보 서류(기업→ITP)

순번	구분	제 출 서 류	비고
1	필수	지원 대상 근로자 명단 1부	사업장
2	필수	사업 참여 확인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(근로자용) 1부	근로자
3	필수	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협조 및 이행사항 약속서(근로자용) 1부	근로자
4	필수	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(필수) 1부	근로자
5	전세이자	은행 전세자금대출 확인서 및 이자 납입 내역서(은행확인서류)	근로자
6	필수	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	근로자
7	필수	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	근로자
8	기타	전담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	근로자

V 문의사항

- 문 의 처 :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사업단 뿌리산업일자리센터
- 연 락 처 : (Tel) 032-260-0690 / 032-260-0694
- 기타사항
 - 사업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「2024년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」에 따름
 - 사업 참여기업은 매출, 고용 현황 등 자료 제출과 만족도/수요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